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small>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small>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2. 8(목) 총 6매(본문 3)	
담당 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과장 김상수, 사무관 민병우, 강정현, 최수영 •☎ (044) 201-4259, 4312, 4268, 4273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 ” 등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위규 여부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에어부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등 위규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할 예정이며,
 - 조종사 16시간 비행 여부에 대하여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규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 아울러,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승무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비행투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운항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17년 하반기부터 항공사, 조종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 시차 반영, 비정상상황 제한(2시간 → 1시간으로 축소) 등 강화된 승무원 피로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6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중 “익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 조종” 은 조종사의 해외취업 등 일시적인 조종사 부족에 따라 기장이 우측석에서 부기장 임무를 하도록 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 우측석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을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보완하여 우측석 **훈련시간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운항기술기준에 부조종사석 임무자격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시간은 항공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운영(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이스타 항공은 각 1시간 훈련 실시)

○ 참고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항공기(7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 에어버스사 계열 항공기(29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 보잉 계열 항공기는 좌·우측 각각 중앙에 위치한 조종간 사용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에어버스 계열 항공기는 기장석은 좌측에, 부기장석은 우측에 조종간이 설치되어 있어 기장이 우측석 임무를 수행할 때 부조종사석 임무자격 훈련을 이수하고 있음

* 기장은 모두 부기장을 거쳐 승격되기 때문에 우측 조종간 사용경험이 많으나 임시로 임무전환 시 사전 훈련을 실시 중

□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승무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등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조종사 인력양성 등 **수급대책을 마련**(17.12)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항공사의 **노선 인가 시 안전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 5년간 조종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노선 인가시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인력확보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2. 8, 매일경제) >

◆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승무원은 5번 탑승해 실신

- ◆ 16시간 비행 어떻게 가능
 - 8시간 비행, 8시간 휴식 후 곧바로 8시간 투입 예상일 휴식규정 악용
- ◆ 연봉대비 업무강도에 이직 잦아
 - 부기장석 기장이 급히 매우느라 익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 조종
- ◆ 두달새 승무원 4명 병원행
 - 동료 쓰러지면 '대타' 호출 호텔서 실신땀 공상처리 안돼 개인연차 써가며 휴식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강정현 사무관(☎ 044-201-4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운항승무원 시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 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 비행근무 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비고

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헬리콥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2.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연속 28일	연속 365일
기장 1명	10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0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20	1,000

비고

1. 운항승무원의 편성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 편성 항목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2.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조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참고 2**객실승무원 시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객실승무원 수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최소 객실승무원 수	14시간	8시간
최소 객실승무원 수에 1명 추가	16시간	12시간
최소 객실승무원 수에 2명 추가	18시간	12시간
최소 객실승무원 수에 3명 추가	20시간	12시간
비고: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3

주요 항공사별 항공기 운영현황

업체별	용도	기종	대수(임차)	탑재능력
대한항공	여객기	B747-400	5 (0)	333-404(1,873석)
		B747-8	10 (8)	368(3,680석)
		B777-200/300/300ER	38 (26)	248-342(10,597석)
		B787-9	5 (5)	269(1,345석)
		B737-800/900/900ER	36 (25)	138-189(5,939석)
		A330-200/300	29 (18)	218-276(7,516석)
		A380-800	10 (8)	407(4,070석)
		BD-500-1A11	2 (2)	254(254석)
	소계	135 (92)	35,301석	
	화물기	B747-400F	9 (3)	1,065톤
B747-8F		7 (7)	938톤	
B777F		12 (12)	1,284톤	
소계		28 (22)	3,287톤	
합계		162 (111)	35,147석/3,287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B747-400	3 (2)	264-359(982석)
		B777-200	10 (10)	246-300(2,789석)
		B767-300	7 (5)	250-290(1,850석)
		A321-100/200	20 (20)	171-220(3,551석)
		A330-300	15 (15)	275-290(4,290석)
		A320-200	7 (7)	156(1,092석)
		A380-800	6 (6)	495(2,970석)
		A350-900	4 (4)	311(1,244석)
	소계	72 (68)	18,768석	
	화물기	B747-400F	11 (5)	1,273톤
B767-300F		1 (1)	57톤	
소계		12 (6)	1,330톤	
합계		84 (75)	18,768석/1,330톤	
제주항공	여객기	B737-800	30 (30)	186-189(5,649석)
	합계	30 (30)	5,649석	
진에어	여객기	B737-800	20 (20)	180-189(3,660석)
		B777-200	4 (4)	393-355(1,572석)
	합계	24 (24)	5,232석	
에어부산	여객기	A320-200	6 (6)	162(972석)
		A321-200	17 (17)	191-220(3,431석)
	합계	23 (23)	4,433석	
이스타항공	여객기	B737-700	2 (2)	149(298석)
		B737-800	15 (15)	186-189(2,820석)
		B737-900ER	2 (2)	213(426석)
	합계	19 (19)	3,544석	
티웨이항공	여객기	B737-800	18 (18)	189(3,591석)
	합계	18 (18)	3591석	
에어서울	여객기	A321-200	6 (6)	195-220(1,195석)
	합계	6 (6)	1,195석	
에어인천	화물기	B737-400F	2 (2)	32톤
총계			369(310)	약77,686석/4,779톤